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12.2. 공포, 2026. 6.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 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주거이전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대상자는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

당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u> <u>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u> <u>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u> <u>② 주거이전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u>

대상자는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